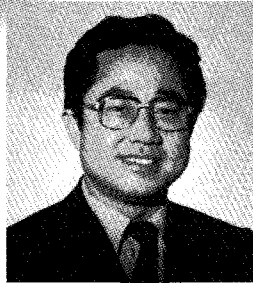


# 통합 1주년 협동조합의 개혁과제



장원석  
단국대학교 농업경제학 교수

I. 농민을 위한 농협,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로

II. 조직 혁신 및 기본적 개혁방안

III. 중앙회 개혁과제

1. 이사회 규모의 축소 및 기능의 활성화
2. 독립채산제의 실효성 제고와 신·경분리문제
3. 품목별 전문조합연합회 육성
4. 농정활동, 교육, 지도사업 활성화
5. 시군지부 기능 재편성
6. 농축협중앙회 통합 후유증 치유

IV. 회원조합 개혁과제

1. 회원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2. 부실조합의 합리적 정리

V. 주요 개혁과제

1. 유통·정보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종합유통센터의 통합
3. 사료공장 및 유기공 공장의 회원조합 이관
4. 영농기자재 공급제도 개선
5. 농업금융 개혁의 지속적 추진

## I. 농민을 위한 농협,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 회로!

농협의 개혁이란 ① 농민의 실익증대, ②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다. 따라서 농협은 이를 위한 노력을 농민과 함께 추진하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농민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물론 농협중앙회 노조원의 입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서 여타 금융기관 또는 유통기업과 같은 보수와 노동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그러나 구제역이다 브루셀라 병이다 하여 고통을 겪어 왔고, 각종 채해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협동조합의 주인)의 입장에서 그 아픔과 함께하는 머슴정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현실과 정서에 맞지 않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현실성도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우기 WTO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한·중관계 등 국제경제환경과 농업·농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국내환경하에

서 농업·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의회, 민간단체(NGO)가 뚝뚝 뭉쳐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농협과 농민단체가 분열상을 보이고 의견이 분분할때엔 협동조합의 원칙과 본질에 입각하여 국내의 경제환경을 감안한 지혜로운 대타협을 하는 길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감정대립과 힘겨루기 싸움은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협이 환골탈퇴의 자세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농업·농촌·농민에겐 희망이 없다. 조합원을 위한 회원조합,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 농업·농민이 망할 때, 농협 임직원의 존재의 의의는 있을 수 없다. 농업·농민과 농협임직원은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농협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동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 의회, 시민, 학계가 농업·농민·농협에 애정을 갖고 함께 하도록 끌어 들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의 개혁과제를 조직혁신 및 기본적 개혁방향(제Ⅱ장), 중앙회의 개혁과제(제Ⅲ장), 회원조합의 개혁과제(제Ⅳ장), 주요 개혁과제(제Ⅴ장)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 Ⅱ. 조직 혁신 및 기본적 개혁방향

경영체, 협동조합운동체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구성원(조합

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효율화(슬림화·전문화)와 민주화(참여민주주의 실현·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다.

그 간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다 음 <표 1> 및 <표 2>와 같이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과 재편이 있었다.

주요 변화를 보면, 조직의 면에서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중복업무 조정과 신용사업 통합으로 본부부서의 22개, 지역본부 10개, 금융점은 53개소, 사업장 7개소를 축소하고 임원 및 집행간부의 수도 25명으로 감축하는 한편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도 도입으로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개혁이 요구된다.

중앙회는 슬림화·전문화를 위하여 본부, 지역본부, 시·군

지부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경제·지도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또 한번 재편성작업을 해야 한다.

중앙회 내의 직제도 집중과 선택의 원칙하에 중복기능을 점검, 재편성하고 다단계의 의사결정기구를 더욱 간소화하는 동시에 전문화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도 팀제 도입 및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것은 회원조합이므로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은 향후 협동조합 성패의 가늠자이다.

주요 개혁과제도 ①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기능을 검토하여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동시에 효율화를 기하며, ② 조합의 적정규모

<표 1> 통합농협의 조직현황(2001년 2월말 현재)

조합원 2,376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조합 : 1,33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조합 : 1,278개 (농협 1,132, 축협 146)</li> <li>○ 품목조합 : 110개 (원예 49, 축산 47, 인삼 14)</li> </ul> </li> <li>□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본부 : 33부 1처 1분사</li> <li>○ 지역본부 : 16개 시군지부 : 156개</li> <li>○ 금융점포 : 709개 사업장 : 75</li> </ul> </li> <li>※ 통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본부 : 48부 4처 5분사</li> <li>○ 지역본부 : 26개 금융점포 : 762개</li> <li>○ 사업장 : 82개</li> </ul> </li> </ul>
----------------	---

<표 2> 통합농협의 종사인원(2001년 2월말 현재)

(명, %)

구 분	회원조합	중앙회	계
종사인원	51,231	16,334	67,565
(구성비)	(75.8)	(24.2)	(100.0)

화를 연구하여 재조정하고, ③ 부실조합의 회생방안과 정리방안의 합리적 추진, ④ 인사·급여제도 개선, ⑤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그 외에 세부적인 과제는 IV장과 V장에서와 같다.

### Ⅲ. 중앙회 개혁과제

#### 1. 이사회 규모의 축소 및 기능의 활성화

이사회는 현재 회장과 사업전담 대표이사 4명, 회원조합이사 20명(지역농협 10명, 지역축협 3명, 품목조합 7명), 사외이사 7명 등 총 31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농림해양수산분야 국정전반을 다루는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2명보다 많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에 걸맞지 않으므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성과 전문성이므로 이에 상응한 재편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극비를 요하는 사안은 시차를 조정하여 비공개회의를 해야 하지만 일반사항은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농민단체와 언론에 알려 중앙회 운영에 관한 관심과 투명성을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문제는 전문조합 육성과 품목별 수급조정에 의한 가격 안정화가 핵심이므로 이는 중앙회와 정부의 공동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합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과 수급조정 기능은 협동조합과 정부의 공동 업무이기도 하므로 그 비용은 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연합회 경영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고해야 한다.

#### 2. 독립채산제의 실효성 제고와 신·경분리문제 검토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담당 3인의 대표이사체제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철저한 독립사업부제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입직원 채용과 직원의 재배치 때에 교류차단 등 명실상부한 독립사업부제로서의 신뢰를 얻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여부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석·진단이 필요하고, 통합농협법에 따라 외부 용역을 수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과 연구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으므로 용역수행 과정 중에 농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실질적 절차와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 3. 품목별 전문조합 연합육성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문제는 전문조합 육성과 품목별 수급조정에 의한 가격 안정화가 핵심이므로 이는 중앙회와 정부의 공동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합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과 수급조정 기능은 협동조합과 정부의 공동 업무이기도 하므로 그 비용은 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연합회 경영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자생능력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연합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보자는 의욕이 앞선 예가 많아 농업관련조직은 주먹구구식이라느니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외부·내부의 눈총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현하여 연합회를 육성해야 한다.

#### 4. 농정활동, 교육, 지도사업 활성화

농정활동은 농민단체의 주업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간접적

지원 내지 직접적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농민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향상"이라는 협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전농(전국농민회연맹)의 제안과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동의로 농정활동, 교육, 지도사업 전달 부회장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농협법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농민단체의 요구가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 농정활동 전담 임원은 한사람도 없다. 중앙회장이 이를 담당할 수도 있으나, 중앙회장의 피선거격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어 농정전문가가 아니며 대표권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무전문가 출신의 전문가가 보좌할 필요가 있다. 직위는 법정 직위가 아니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어렵지만,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한사람이 전담하여야 명과 실이 일치한다.

현재, 농민단체나 범국민 NGO가 농정관련 활동을 할 때,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창구가 중앙회에는 없고 실무담당 책임자인 차장과 합의를 해도 부부장, 실장, 부장, 상무, 대표이사, 회장 등 5~6단계의 결재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예가 허다하다.

전담임원 또는 전담집행간부

를 두는 문제는 위인설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농민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농민단체의 논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 5. 시·군지부 기능 재편성

시·군지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요약하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 부재, 경제사업의 부재 등이다.

따라서, 시군지부는 시군단위의 농정활동 및 교육, 지도사업,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편해야 한다.

특히, 시군과 연계하여 지역 농업 종합개발사업과 재정 및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회원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보완하는 영역 또는 회원조합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지금처럼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경제기능이 단순한 문서 취합기능에 머무는 일은 크게 반성하고 바꾸어야 한다.

## 6. 농·축협중앙회 통합 후유증 치유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 축산농가들과 일선축협이 겪고 있는 불만과 허탈감이 적지 않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축산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를 재편해야 한다.

한편, 2000년 6월 30일 기준 (구) 축협은 총 4,458억원(일반회계 2,224억원, 상호금융회계 3,234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중 상호금융특별회계 2,234억원의 손실은 축산발전기금의 채권을 양도받아 보전하였다. 일반회계손실금도 1,354억원은 (구)축협자기자본(잉여금과 출자금) 중에서 잉여금으로 정리했고, 잔여 870억원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구)농협의 잉여금 등으로 잠정 처리하였다.

여기서 870억원의 (구)축협 출자금 잠식분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엔 회원조합 자본재조정 및 대다수 회원축협 출자금의 완전잠식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축산농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 IV. 회원조합 개혁과제

### 1. 회원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회원조합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경제권과 생활권 중심으로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 부실조합은 선 구조조정으로 동반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적자 및 농·축협의 업무중복 지사무소, 경영지도 대상조합의 통폐합권고 사무소 등의 통폐

합을 추진하고 직원의 명예퇴직을 촉진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인력구조를 개선할 때 상당수의 회원조합에서는 힘없는 기능직, 임시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저임금 기능직이 담당할 단순 업무를 고임금 사무직이 담당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어 왔던 바, 조합장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직원간의 인화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부실조합의 합리적 정리

자본잠식, 부실대출 파다 등의 조합은 ① 자율적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② 연후에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조치 등 경영지도를 해야한다.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은 정리를 하거나 인수조합의 경영

부담 경감과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주어 합병해야 한다.

이처럼 3단계의 단계적, 합리적 방안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실조합 정리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야 한다.

2000년 10월 25일~11월 18일까지 농림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공인회계사 등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113개 조합은 자기자본의 일부 또는 완전잠식상태로서 3,89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시현하였다.〈표 3〉

한편, 169개 조합은 평균채무초과비율이 6.4%, 조합당 평균채무초과금액이 42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화 노력의 성패가 매우 불투명하다.〈표 4〉

이들 조합의 부실요인은 ①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및 구제역

파동 등에 따른 농업경영여건의 악화로 연체·부실채권 증가, ②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감독기준의 강화에 따른 신용대손충당금의 적립부담 증가, ③ 정책사업 및 농업인 실익을 위한 구·판매 등 경제사업 수행에 따른 고정투자 부담 및 사업위험 증가 등이다.

이처럼 회원조합 나름의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중앙회, 회원조합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① 부실규모 누증으로 파산의 우려가 있고, ② 농민조합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며, ③ 농촌지역의 금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때문이다.

금년 3월 6일 제1차 합병추진협의회에서는 조합별 정리방안을 잠정적으로 분류하여 합병대상 64개소 조합 중 38개 조합은 합병권고를 하였다. 합병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정부가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조합원의 동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개혁이란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적 동참에 의해서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자기자본 잠식조합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정 상		잠 식					
			일부잠식		완전잠식		계	
	조합수	적립액	조합수	잠식액	조합수	잠식액	조합수	잠식액
농협	36	303	11	44	23	709	34	752
축협	20	135	19	188	60	2,950	79	3,138
계	56	438	30	232	83	3,658	113	3,890

〈표 4〉 169개 조합의 채무초과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채무초과비율								조합당	
	1%이하		1%초과		3%초과		20%초과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비율	금액
농협	14	38	81	208	38	2,126	-	-	4.8	34
축협	6	35	21	313	51	2,441	21	1,931	7.6	48
계	20	73	39	521	89	4,567	21	1,931	6.4	42
점유비	11.8	1.0	23.1	7.3	52.7	64.4	12.4	27.2	-	-

## Ⅳ. 주요 개혁과제

### 1. 유통·정보화사업 활성화 위한 기본방향

경쟁체제인 시장경제에서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기술·경영·유통·정보화 혁신 등 4대 혁신에 달려 있다.

여기서 유통 및 정보화와 관련시켜보면, (광의의)직거래사업의 활성화와 내실화, 디지털(digital)유통의 적극적 추진으로 산지 및 소비자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빈부격차로 귀결되므로 중앙회와 회원조합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작목반, 영농법인, 산지유통센터, 물류센터를 조직적으로 연결시키고, 사이버마켓(Cyber Market), 홈쇼핑(Home Shopping)방송, 각종 신문, 방송매체 등을 동원하여 수입농산물의 공세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해야 한다.

소비자의 도매시장 기능의 합리화, 소비자 농협과 중앙회 소유의 각종 유통사업체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의 연계, 여성소비자단체와의 연대사업, 유통정보 지원체계, 농협식품 품질보증제 확대, 틈새시장 공략, 브랜드화,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 2. 종합유통센터의 통합

농협이 참여한 10개소의 종합유통센터를 통합해야 하느냐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지자체가 종합유통센터의 부지도 값싸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국적 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유통업체가 전국의 점포를 일사불란하게 운영·관리하여 품질경쟁, 서비스경쟁, 가격파괴 등 가격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농협의 10개 종합유통센터도 통합적 경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농협의 종합유통센터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렸지만, ① 조직·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경영상의 비효율, ② 개별구매로 인한 시장교섭력 약화, ③ 전산시스템의 개별 구축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 제한, ④ 유통센터간 조정기능 미흡, ⑤ 유통전문인력 육성 및 효율적 운용에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운 단계적 합리적으로 제거하



면서 (주)농협유통을 지주회사 형태로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농협의 10개 종합유통센터는 농협단독의 출자 형태(양재, 창동, 청주, 전주)도 있지만, 콘서시업(군위, 대전, 천안) 및 공공유형(성남, 고양, 대구)도 있으므로 지자체와 주주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기관, 조합 및 농업인, 고객과의 유대강화로 농산물유통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통합에 따른 효과로서는 ① 조달과 판매의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② 유통인력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의한 전문가 육성, ③ 중복조직 통합 등 조직의 슬림화로 인원, 비용의 절감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영농기자재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단일적 계통공급을 하여 회원조합의 공급가격은 기자재 회사나 대리점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회의 영농기자재 공급체계는 크게 변하여 종전보다 농업인에게 실익이 가도록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벌써부터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학계와 사업연합 추진체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선의의 서비스 제고 경쟁을 계속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급체계를 다양하게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3. 사료공장 및 유가공 공원의 회원조합 이관

사료공장 및 유가공 공장의 회원조합 이관문제는 ① 단독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방법, ② 여러개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법, ③ 중앙회가 운영하는 방법, ④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경영하는 방법, ⑤ 지자체와 회원조합 등의 컨서시엄 형태 중에서 회원조합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2000년 12월 21일~26일까지 전체 회원 축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신조합(180개)의 77%(139)가 "전체공장을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자회사화 하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이는 많은 회원조합들이 출자여력과 경영책임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서울우유에서는 유가공공장을 단독으로 인수할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2000년 4월 2일), ② 안산 사료공장은 공급구역 관내 회원축협이 공동으로 인수할 경우 100% 인수가 가능하며, ③ 축협협의회 회장단 및 사료가공 조합장 협의회(2001년 2월 26일)에서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공동사업 방식을 희망했다. 그리고 2001년 4월 26일 회의에서는 낙농조합연합으로 포괄적 이양을 하되, 충청남도에서 수용가능한 지원방식을 검토 후 확정 추진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회원조합으로의 이양여부는 회원조합의 자금여력, 경영책임, 중앙회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는 물론 그 동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간 합의를 진행 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 4. 영농기자재 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영농기자재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단일적 계통공급을 하여 회원조합의 공급가격은 기자재 회사나 대리점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논자는 1998년부터 종래의 대리점체제에서 양판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영농기자재의 공급은 ① 안성에서 200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 당진에서 추진중인 회원조합 공동

의 “연합사업체제”, ② 중앙회의 계통공급, ③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공동사업, ④ 충남에서 추진중인 지자체, 농민단체(충남한농연)의 공동사업 등 다양한 체계를 각 지역 회원조합의 역량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성의 “연합사업”은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뒤에 당진에서도 추진중인데 이들 회원조합의 주장은 농협중앙회 본부나 시군지부의 인력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전근 등이 잦아 사업인력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합사업도 안성의 경우처럼 유통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최근 중앙회는 개혁차원에서 공급제도상의 큰 변화를 보여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즉, ① 판매장려금 등 시판대비 불리한 계통계약조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② 실구매원가 개념을 도입, 동 원가를 기준으로 조합장 책임하에 시판상에 무한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가 사례를 없애며, ③ 다양한 농약 할인판매 실시, ④ 시장의 세분화 및 판매촉진전략의 추진 등이다.

또한 농기계 판매가격 자율화

와 (주)국제와 전략적 제휴로 농기계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농기계 판매가격을 자율화하고, ② 5대 업체 단합 파괴 등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시정한 것이다.

계통구매방식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계약 외에 회원조합이 업체와 직접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기자재 직수입 확대와 원료시장 진출 등으로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재 판매와 기술지도를 병행한 지도구매로 전환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앙회의 영농기자재 공급체계는 크게 변하여 종전보다 농업인에게 실익이 가도록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벌써부터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학계와 사업연합 추진체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선의의 서비스 제고 경쟁을 계속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급체계를 다양하게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5. 농업금융 개혁의 지속적 추진

지난 20년간의 농업자본수익률은 80년대에는 평균 8.3%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평균

5.48%로 낮아져 정책자금 금리는 농업자본수익률과 비슷하지만 상호금융 금리보다는 크게 하회하고 있다.(윤재만, “농업자본수익률 변화” 「농협조사월보」, 2001.4) 이렇게 되면, '95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 날 것이다. 따라서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금리는 약 2%포인트정도씩 인하하여 8~9%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정도의 금리수준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 역시 농업의 채산성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높다. 따라서 2%포인트 정도의 대출 이자를 더 낮추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생기는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근거는 농업금융의 특성이 “생산자금과 소비자금의 미분리”라는 점인데, 이러한 농업금융의 특성을 예산당국이 과연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농업금융 개혁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의 취급을 시중은행에도 취급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업금융시장도 경쟁시장으로 유인하고 농협에게 자극을 주어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실효는 별무하고 농업금융기관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농업인에게 득보다는 실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연락처 : 041-550-3613〉